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301호, '25.12.31.공포, '26.7.1. 시행)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기준 신설
(제34조 제3항, 제4항 및 [별표5])

- 법 제34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 범위와 기준을 규정
- 제3항의 규정 사항 외 필요 사항의 하위법령 위임 근거 규정

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서식 개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서식(별지 제24호서식)에 '비고'항목을 추가하여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 등이 필요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정보를 승인통지서에 포함하고 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시·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신 설>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기준

1.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법 제20조 살생물제품 승인 및 법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지 않은 제품 또는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을 다음 각 목의 매체·수단으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되게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품의 겉면(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된 표시

나. 신문·방송 또는 잡지

다. 전단·팸플릿·견본

라. 인터넷(홈페이지, 사회관계망, 블로그 등) 또는 컴퓨터통신

마.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바.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사.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

아.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매체 또는 수단

2.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의 기준

가. 살생물제품이 아닌 제품의 명칭 또는 효과·효능의 주장 등에 ‘살균’, ‘살조’, ‘살충’, ‘살서’, ‘기피’, ‘보존’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표시·광고

나. 살생물처리제품 아닌 제품의 명칭 또는 효과·효능의 주장 등에 ‘항균처리’, ‘보존처리’라는 표현이 포함된 표시·광고

다. 대학교수, 방역전문가(방역업자) 등 그 밖의 유해생물제거 분야 전문가가 살생물 기능에 대한 효과·효능을 주장하기 위해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시·광고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앞쪽)

승인받은 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살생물제품명		승인번호	제 호
살생물제품유형		승인 유효기간	
제형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표준사용량		용도	
제조시설 소재지		유통기한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효과·효능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제조방법			
살생물물질 공급자명 및 주소			
살생물처리 제품 종류 및 사용방법			
비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0항·[]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변경내용

연월일	내 용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② (생략) <u><신설></u> <u><신설></u>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u> ④ <u>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시·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